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729호

의 안 명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대상기관 해양수산부

의 결 일 2023. 9. 4.

주 문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4일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옥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2023. 9.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목 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조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22. 12월, 대통령님 말씀)
- 2023년 노동부 업무보고 시 ‘노동개혁’ 발표(‘23. 2. 9.)
- “공공기관 노조갑질 등 불법행위 근절 등 제도개선 요청”(‘23. 2. 27. 국민신문고 민원)

□ 추진배경

- 정부는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 중
 - ※ 20톤 미만 선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부 고용허가 대상
 - ※ ‘90년 단계적인 외국인 선원 도입계획 발표, ‘91년 선원노련과 외국인 선원 승선 합의 이후 단계적 증가, ‘21년 기준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전체 선원 5만 9,843명 중 약 46%)
-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선주들(선박소유자단체)은 사전에 외국인 선원 규모를 국내 노동조합(선원노련)과 합의해야만 고용할 수 있는 구조
 -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단체에 외국인 선원 관리비와 복지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선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
 - 외국인 선원 송출, 교육, 복지 문제 외 무단이탈 문제 등 개선 제기
- 경제 위기 속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외국인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23. 2 ~ 5월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23. 5 ~ 7월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 ‘23. 9월 분과위·전월위, 안전상정 및 제도개선 권고



II. 관련현황

□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 **(외국인 선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 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2조 2호)

※ **(관련규정)**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참고) 외국인 선원 관련 제도 연혁 >

- '90. 11월 외항선과 제3국 기지에 있는 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도입계획 발표
- '91. 7월 한국선주협회와 선원노동자단체 간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 승인 (외항선에 외국인 선원 58명 첫 승선)
- '98. 1월 외국인인력 고용관리지침 제정
- '07. 8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외국인인력 고용관리지침 전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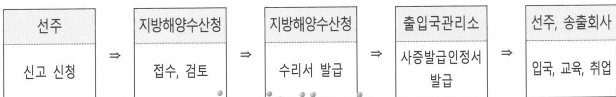
- **(고용기준)** 도입규모 등을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합의하여 정함(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

※ 노사간 합의후 해수부 승인 요청

- **(고용절차)**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등 의견을 듣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신고서에 날인 후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 '17. 7월부터 정보통신망(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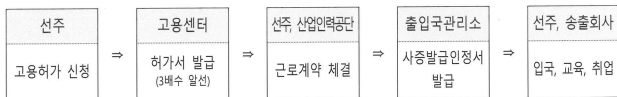
< 고용신고 처리절차 >



○ (적용대상) 5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 어선

※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참고) 20톤 미만 고용허가 절차 >



□ 외국인 선원 현황

○ (선원수) '21년말 기준 선원 59,843명 중 외국인은 27,333명(약 45.7%)

< 업종별 외국인 선원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월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외항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내항순항 여객선
2010년	17,558	7,899	74	4,006	497	5,156	-
2015년	24,624	12,066	39	3,374	673	8,441	31
2016년	23,307	11,141	35	2,991	791	8,314	35
2017년	25,301	12,109	42	3,810	823	8,484	33
2018년	26,321	11,813	10	3,850	878	9,733	37
2019년	26,331	11,461	10	3,869	923	10,032	36
2020년	26,775	12,196	-	3,824	937	9,793	25
2021년	27,333	13,121	36	4,324	922	8,916	14

* (참고) 선박유형

- (외항선) 외국과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선박
- (외항여객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 운항하는 여객선
- (원양어선) 원양의 어장에 출어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내항선)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 (연근해어선)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내항순항여객선)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 (국적별 선원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순

< 외국인 선원 국적별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기타
총계	27,333	11,166	5,880	4,405	4,653	625	604
외항선	13,121 (3,293)*	3,260 (1,059)	5,233 (941)	65 (59)	3,922 (963)	62 (19)	579 (252)
원양어선	4,324	3,416	603	268	9	5	23
내항선	922	204	-	-	718	-	-
연근해어선	8,916	4,282	-	4,072	4	558	-
외항여객선	36	-	34	-	-	-	2
내항순항여객선	14	4	10	-	-	-	-

* ()는 해기사수(외항선에만 승선)

< 연도별 외국인 선원 국적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2021. 12. 31. 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중국	기타
2010년	17,558	4,248	3,653	1,907	3,221	4,457	72
2015년	24,624	6,895	6,321	4,697	4,619	2,000	92
2016년	23,307	6,991	5,503	4,642	4,235	1,737	199
2017년	25,301	8,275	5,903	4,720	4,512	1,669	222
2018년	26,321	9,084	5,779	5,355	4,346	1,501	256
2019년	26,331	9,498	5,557	5,452	4,306	1,304	214
2020년	26,775	10,699	5,464	5,025	4,376	978	233
2021년	27,333	11,166	5,880	4,405	4,653	625	604

Ⅲ. 문제점 분석

1 외국인 선원 위탁관리 근거 미비

○ 노동여건 변화로 외국인 선원 매년 증가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선원 취업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23년 70.5%에서 '33년 63.9%로 대폭 감소 전망

< 국내 인구변화 현황 및 추계(국가통계포털 자료 정리) >

(단위 : 명)

연도	총 인구수	0~14세(비율)	15~64세(비율)	65세 이상(비율)
2014년	50,746,659	7,213,693 (14.2%)	37,255,840 (73.4%)	6,277,126 (12.4%)
2015년	51,014,947	7,029,883 (13.8%)	37,443,896 (73.4%)	6,541,168 (12.8%)
2016년	51,217,803	6,864,563 (13.4%)	37,596,157 (73.4%)	6,757,083 (13.2%)
2017년	51,396,911	6,724,283 (13.1%)	37,571,568 (73.2%)	7,066,060 (13.8%)
2018년	51,585,058	6,595,054 (12.8%)	37,623,919 (72.9%)	7,366,085 (14.3%)
2019년	51,764,822	6,448,080 (12.5%)	37,627,748 (72.7%)	7,688,994 (14.9%)
2020년	51,836,239	6,305,870 (12.2%)	37,378,502 (72.1%)	8,151,867 (15.7%)
2021년	51,744,876	6,143,634 (11.9%)	37,029,895 (71.6%)	8,571,347 (16.6%)
2022년	51,628,117	5,934,472 (11.5%)	36,675,233 (71.0%)	9,018,412 (17.5%)
2023년	51,558,034	5,686,017 (11.0%)	36,372,084 (70.5%)	9,499,933 (18.4%)
2024년	51,500,029	5,462,580 (10.6%)	36,029,123 (70.0%)	10,008,326 (19.4%)
2025년	51,447,504	5,252,258 (10.2%)	35,609,992 (69.2%)	10,585,254 (20.6%)
2026년	51,397,309	5,020,301 (9.8%)	35,179,627 (68.4%)	11,197,381 (21.8%)
2027년	51,348,388	4,810,732 (9.4%)	34,867,157 (67.9%)	11,670,499 (22.7%)
2028년	51,300,095	4,623,091 (9.0%)	34,477,274 (67.2%)	12,199,730 (23.8%)
2029년	51,250,905	4,474,872 (8.7%)	34,179,583 (66.7%)	12,596,450 (24.6%)
2030년	51,199,019	4,329,353 (8.5%)	33,813,340 (66.0%)	13,056,326 (25.5%)
2031년	51,142,848	4,205,379 (8.2%)	33,442,974 (65.4%)	13,494,495 (26.4%)
2032년	51,082,971	4,132,442 (8.1%)	33,040,470 (64.7%)	13,910,059 (27.2%)
2033년	51,018,619	4,103,438 (8.0%)	32,577,124 (63.9%)	14,338,057 (28.1%)

- 국적 선원수는 매년 감소('06년 38,821명 → '21년 32,510명)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선원은 급증('06년 3,590명(9.2%)에서 '21년 11,927명(36.7%))

< 연도별 국적선원 연령 현황(한국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

(단위 : 명)

연도	계	25세 미만	25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2006년	38,821	1,005 (2.6%)	2,288 (5.9%)	5,391 (13.9%)	11,880 (30.6%)	14,667 (37.8%)	3,590 (9.2%)
2007년	38,608	908 (2.4%)	2,041 (5.3%)	4,461 (11.5%)	10,897 (28.2%)	15,336 (39.7%)	4,965 (12.9%)
2008년	39,002	970 (2.5%)	2,053 (5.3%)	4,417 (11.3%)	10,192 (26.1%)	15,729 (40.3%)	5,641 (14.5%)
2009년	39,128	1,032 (2.6%)	2,077 (5.3%)	4,356 (11.1%)	9,918 (25.4%)	16,044 (41.0%)	5,701 (14.6%)
2010년	38,758	1,183 (3.1%)	2,163 (5.6%)	4,032 (10.4%)	9,329 (24.0%)	15,549 (40.1%)	6,505 (16.8%)
2011년	38,998	1,137 (2.9%)	2,587 (6.6%)	4,054 (10.4%)	8,610 (22.1%)	14,506 (37.2%)	8,104 (20.8%)
2012년	38,906	1,275 (3.3%)	2,630 (6.7%)	3,940 (10.1%)	8,125 (20.9%)	14,466 (37.2%)	8,470 (21.8%)
2013년	38,783	959 (2.5%)	2,613 (6.7%)	4,388 (11.3%)	8,864 (22.9%)	14,233 (36.7%)	7,726 (19.9%)
2014년	37,125	1,150 (3.1%)	2,961 (8.0%)	3,771 (10.1%)	7,156 (19.3%)	12,742 (34.3%)	9,345 (25.2%)
2015년	36,976	1,161 (3.1%)	2,969 (8.0%)	3,909 (10.6%)	6,902 (18.7%)	12,252 (33.1%)	9,783 (26.5%)
2016년	35,685	1,065 (3.0%)	2,398 (6.7%)	3,299 (9.3%)	5,116 (14.3%)	11,429 (32.0%)	12,378 (34.7%)
2017년	35,096	1,299 (3.7%)	2,654 (7.6%)	3,154 (9.0%)	4,747 (13.5%)	10,454 (29.8%)	12,797 (36.4%)
2018년	34,751	1,201 (3.5%)	2,566 (7.4%)	3,131 (9.0%)	4,640 (13.3%)	10,380 (29.9%)	12,833 (36.9%)
2019년	34,123	1,072 (3.2%)	2,568 (7.5%)	3,254 (9.5%)	4,579 (13.4%)	9,749 (28.6%)	12,901 (37.8%)
2020년	33,565	1,029 (3.1%)	2,408 (7.2%)	3,206 (9.5%)	4,553 (13.6%)	9,019 (26.9%)	13,350 (39.8%)
2021년	32,510	995 (3.1%)	2,636 (8.1%)	3,294 (10.1%)	4,901 (15.1%)	8,757 (26.9%)	11,927 (36.7%)

【 선원 고령화 문제 우려('22. 4월, 해양수산 분야 간담회 시 의견) 】

- 젊은 층 선원 유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도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사례와 같이 **70대 선장과 기관장들이 선박을 운행할 수 밖에 없고**, 야간 당직 없이 **자동항법으로 운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사고도 우려

- 외국인 선원은 국적 선원 부족에 따라 '91년 최초 승선 후 지속 증가

※ 최초 승선 이후 '18년만인 '08년 1만명을 넘어(12,777명) '12년 2만명을 넘는 이후 (21,327명), '21년말 기준 선원 59,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7,333명 수준(약 45.7%)

< 외국인 선원 현황(한국 선원 통계연보 자료 정리)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60,397	61,072	60,454	60,340	59,843
한국인 선원수 (비율)		35,096 (58.1%)	34,751 (56.9%)	34,123 (56.4%)	33,565 (55.6%)	32,510 (54.3%)
외국인 선원수 (비율)		25,301 (41.9%)	26,321 (43.1%)	26,331 (43.6%)	26,775 (44.4%)	27,333 (45.7%)
	외항선	12,109	11,813	11,461	12,196	13,121
	외항여객선	42	10	10	-	36
	원양어선	3,810	3,850	3,869	3,824	4,324
	내항선	823	878	923	937	922
	연근해어선	8,484	9,733	10,032	9,793	8,916
	내항순항여객선	33	37	36	25	14

○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 위탁

- 법령상 명확한 위임근거 없는 해수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고시)'에 따라 외국인 선원 도입 및 관리 업무를 선주 관련단체에 위탁

※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관련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선원법」 상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는 실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별도 협약 없이 지침만을 근거로 국가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 수협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운영내용, 성과 등 평가 한계

※ (참고)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 (생략)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 (생략)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생략)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생략)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 (생략)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선원인력 수급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 (생략)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3(업무의 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 도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외국인선원의 입·출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충상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선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②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송입업체별 정원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지침 내 운영절차 등 세부규정이 없어 선주 관련단체는 자체 규정 등을 임의로 마련하여 운영

※ 수협중앙회의 경우 자체 내규인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을,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상선 등 외국인 선원 운용요강',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마련·운영 중

※ 국내 장기 체류 자격이 없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선원과 관련한 단체는 별도 내규 없이 노조 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

<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선주 관련단체 >

구 분	연근해 어선	외항선	여객선, 내항선	원양어선
선주 관련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선협회

< 선주 관련 단체 외국인선원 관련 내규 주요내용 >

규정명	주요내용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수협중앙회)	■ 고용기준 교섭(회원조합 임직원, 업종별 지역별 선주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20인 이내 인력풀 구축운영) ■ 수수료 등의 징수 ■ 외국인 선원 입국 전·후 교육, 고충상담센터 운영 ■ 관리업체, 송출회사 지정 ■ 외국인 선원 자격요건, 선발절차, 건강검진, 관리 등
내항상선 등 외국인 선원 운용요강 (한국해운조합)	■ 송출국가 및 관리업체 선정 및 취소 ■ 외국인선원 중재위원회, 상담 지원 ■ 노사합의 및 고용협의회 운영절차 ■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지원, 등록, 건강검진 지원 ■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징수 절차 ■ 외국인선원 교육, 관리업체 선정 등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 고용협의회 운영 규정 (한국해운조합)	■ 협의회 구성(선원노련 위원장과 조합회장이 각 5명 지명) ■ 협의회 기능(노사합의, 선사별 총정원제 등) ■ 단체협약 적용·승인 및 선사별 총정원제 운영 승인 ■ 협의회 회의개최, 의결 정족수 등

○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국내 선원 노동조합이 결정

- 주요 정책 결정사항임에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등을 법령근거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선원노동조합단체와 협의 결정

※ 20톤 미만 선박 선원은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규모를 결정 하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실무위원회만 관련노조 참여), 20톤 이상은 업종별 선주 관련단체가 선원노련과 합의 후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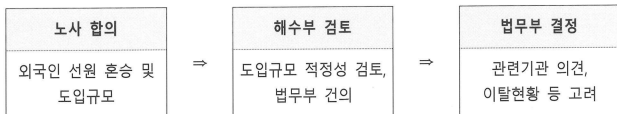
<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구분 >

구 분	20톤 미만 선박 선원	20톤 이상 선박 선원
규모검토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선원노련, 업종별 관련단체 합의 후 해수부 승인
고용신고 절차	①허가신청(선주) → ②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③근로계약체결(선주 등) → 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리소) → ⑤입국, 교육, 취업	①신고신청(선주) → ②신고서 검토, 수리(해양수산청) → ③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리소) → ④입국, 교육, 취업
임금 등 관리	선주가 임금, 숙식비 등 관리	고용협의회(선원노련, 업종별 관련단체)에서 임금 등 협상, 결정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 (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20톤 미만 선박 선원 고용관련) >

구 분	세부내용
구성	20명 내외(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련부처 차관(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자부, 고용부, 중소기업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심의·의결 사항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고용 사업 및 사업장, 사업장별 고용규모, 송출국가별 도입업종 및 규모, 권익보호 등
실무회의	근로자위원(노동조합 추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정부위원(부처 3급 이상 등)
관련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제7조

< (참고)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결정절차 >



- 업종별 노동조합도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만 지침에서 명기하고 있을 뿐, 관련 노동조합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참고) 20톤 이상 선박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등 합의 기관 >

구 분	연근해 어선	외항선	여객선, 내항선	원양어선
선주 관련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선협회
선원 노동조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노총 산하)			전국원양산업 노동조합(한노총 산하)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①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② 다수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업종별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제1항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을 업종별로 선박소유자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제120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비자발급 등 사후 절차 진행 시에도 노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선원노조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

※ 노조측은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확인,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23. 6월, 선원노련 간담회 시 의견)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고용신고)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생략)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 (생략) 입어국의 현지인(외국인선원을 말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생략)

1. ~ 2. (생략)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 5. (생략)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2(고용추천)

①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 (생략)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 1부

2. ~ 9. (생략)

- 선원노조는 국적선원 취업과 보호를 사유로 외국인 선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협상과정에서 의견 대립 사례 발생

【 노사간 의견대립 사례 ('22. 4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간담회) 】

-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협상 과정에서 국내선원 우선 채용, 국내선원이 탑승을 안해도 노조에 동일 임금 지급, 국내선원 100% 동의 시 외국인 선원 채용 등 파격 조건에도 협상 결렬
- 선원 고령화로 일부 단체에서 일반 부역 선원 외 해기사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해기사 허용 시 향후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해운협회 허용 이후 재협상 한계)

○ 관계기관 노력에도 제도개선 조치 미흡

- 19대(2012~2016), 20대(2016~2020) 국회 회기 중 정부 주도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관련 입법화 노력(「선원법」 개정)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19대, 20대 국회 「선원법」 개정안 >

제출연월일	제출자	주요내용
2014. 12. 31.	정부	외국인 선원 관리 관련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 시 해수부장관 등에 신고하도록 개정
2017. 12. 29.	정부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 '21. 4월 해수부가 '한국수산업자노동법' 입법 과정을 추진하면서(입법예고) 외국인 선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수협중앙회, 송입업체, 선원노련 등 이해관계자 반대로 무산

- 관계부처(해수부)는 수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위탁 관리 근거 미흡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참고) 해수부 수협중앙회 감사사례(’20. 12월, 처분내용) 】

- 외국인 선원체 도입 및 관리업무에 대한 국가사무를 수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의 책임소재 및 관리감독 등이 불명확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국가의 공공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미약**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수탁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 ※ 수협중앙회는 「(가칭)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어업분야 외국인 선원 통합관리, 수협중앙회를 외국인선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외국인력 고용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력 복지기금 조성 근거 마련 등 건의(’23. 3월)

2 복지기금, 관리비 등 징수, 공개 미흡

○ 복지기금 징수 등에 따른 선주 부담

- 선주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경우 업종별로 매월 일정액의 특별 회비와 복지기금을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에 납부 (선주단체별 외국인선원 1인당 월 1만 8천원 ~ 10만원 징수)

< 선주단체별 외국인선원 1인당 월 복지기금, 노조회비 등 징수 규모 >

구 분	연근해 어선 (수협중앙회)	외항선 (한국해운협회)	여객선, 내항선 (한국해운조합)	원양어선 (한국원양어선협회)
노조회비	3만원	5만원	3만원	1만 8천원
복지기금	5만원	5만원(40불)	2만원	-

< 단체협약 사례 >

② 제1항에서 정한 정성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의 개정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8조 (특별조항비)

외국인 선원 급여에서 월 30,000원의 특별조항비를 일괄 공제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당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노련에 납부한다.

제29조 (노사협력기금)

제28조와는 별도로 선원 1인당 월 20,000원의 노사협력기금을 당해 노동조합에 출연하여 단위노사의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발전 및 선원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하며, 당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선원노련에 출연한다.

제30조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

① 본 협약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개별 선박에 대한 본 협약의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준수에 관한 노·사 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사별 총 결정액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련 또는 협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선박에 대한 본 협약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약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사항
- ③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본회의로 각급하여 선원노련 위원장과 해운조합 회장이 서명, 날인한 후 해당수단부장에게 제출한다.
- ④ 기타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제출)

단위노사는 개별 선박에 대한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제30조에 의한 협의회에 심의하여야 한다.

< 노사합의서 사례 >

9. 노사는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고 제7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선원장정책협의회의 산하에 노사 동수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10. 외국인선원은 선원노련의 특별조항원으로, 급여에서 월 30,000원의 특별조항비를 일괄 공제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당해 선원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원노련에 납부한다.

11. 선주는 외국인선원 1인당 월 20,000원의 노사협력기금을 제10조와는 별도로 당해 노동조합에 출연하여 단위노사의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발전 및 선원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한다. 단, 당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선원노련에 출연한다.

12.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는 선원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선박 및 선주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며 선주는 제7조의 적용·승인을 위하여 제9조에 의한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3. 해운조합은 외국인선원의 건강진단에 필요한 병원을 선원노련과 합의하여 지정하고,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제불이 발생하거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해당 선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운조합이 대신하여 책임진다.

14. 본 합의내용의 합의지 시행과 외국인선원고용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승하선 공문을 독하도록 하며, 이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협의회에서 발급한 단체협약과 승인서를 첨부토록 한



- 전주 관련 단체 또한 별도 근거 없이 자체 내규에 근거하거나 관행적으로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일정금액을 임의 징수

※ 수협중앙회는 선원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선원 1명당 월 3만원을 징수하여 중앙회와 조합에 배분

< 수협중앙회 선원관리비 징수 및 집행내역 >

구분 (징수주체)	수납액	사용구분	배분액	
			중앙회	조합
선원관리비 (수협중앙회)	월 3만원	소계	월 15천원	월 15천원
		선원관리비용	월 12천원	월 13천원
		복지기금	월 3천원	월 2천원

※ 해운조합은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운영, 기타 소요비용 충당 목적으로 외국인 선원 1명당 월 5만원을 징수(자체 공제사업 참여자는 월 1만원)

※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국내 체재가 거의 없어 별도 관리비가 없는 것으로 답변

< 수협중앙회(외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중앙회는 외국인선원 도입업무에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금액, 징수 및 관공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납한 수수료 등의 일부를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금의 조성 및 퇴직조합의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소요비용 충당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제9조(외국인선원 입국 전 교육) ① 관리업체는 관리지침에 따라 현지 수출회사에게 외국인선원이 다음 각 호의 입국 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일정 및 실시된 교육기록 등의 사항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선실습 교육
2. 한국어 교육
3. 한국문화 교육
4. 어업기술기능 교육
5. 어업안전보건 교육
6. 입국,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 내용
7. 그 밖에 외국인선원 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업체는 제1항의 교육을 수출국가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수월(국내여행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 국내로 출항한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승선실습교육을 포함하여 30일 이상해야 한다.

제10조(외국인선원 교육계획) ① 중앙회는 제9조의 입국전교육의 내용 등이 부적합하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 변경 또는 개선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회사 및 수출국가 교육기관 등을 현지에서 방문하여 점검 등 지도할 수 있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교육내용 등의 변경 또는 개선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개선계획 및 결과 등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해운조합(내항상선 등 외국인선원 운용요강) >

제 18 조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① 이사장은 내항상선 등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운영 및 기타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외국인선원 관리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8.11>

1. 관리비용은 외국인선원 1인당 월 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4호에 따른 공제사업(단,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을 이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관리비용은 월 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08.11.5>
2. 외국인선원의 고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조합의 공제사업을 이용 중인 선박의 공제계약이 실효,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 월부터 잔액 월 당 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외국인선원 최초 승선 당시 조합의 공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선박이 외국인선원 고용계약 기간 중에 조합의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한 다음 월부터 월 당 10,000원(부가세 별도) 적용하여 그 차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8.11.5>

3. 관리비용은 고용주가 제10조의 2에 따라 직접 환원서를 신청하는 때에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5, 2009.11>
② 이사장은 제4항 제1호 및 3호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귀책사유 및 특수한사유로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해 지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비용을 해당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같이 환급한다. <개정 2008.11, 2008.11.5>

1. 외국인선원이 승선한 후 90일 전까지는 관리비용의 전액 <개정 2008.11.5>
2. 외국인선원이 승선한 후 90일 이후에는 그 귀책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액 일부만 환급 계산한 관리비용 <개정 2008.11.5>
- ③ 이사장은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해 지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비용을 해당 고용주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 2008.11.5>

- 회비, 복지기금, 관리비용은 연간 약 200억원, '07년 이후 16년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노조측에서 회비 등 선납 없이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서류 작성에 비협조적이어서 일부 선주 불만 발생

【 **외국인선원 관리비용 부담**('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시 선주 의견) 】

- 선원노련에서 선원 1인당 복지기금으로 월 5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선납해야 선원노련에서 도장을 찍어 선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에서도 1인당 3만원을 선원관리비로 걷어 선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 반면 노조측은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확인, 방지하기 위해 의견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23. 6월, 선원노련 간담회 시 의견)

-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 선주가 노조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

【 **노사합의 내용인 발전기금 납부 거부**('22. 9월, 언론보도) 】

- 일부 선주가 노사합의에 의해 외국인 채용 시 납부하는 발전기금 명목의 1만원 납부를 거부하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노조측 손을 들어줌
- 최근에도 일부 사업장 선주가 노사합의를 깨고 노사발전기금 1만원 납부를 거부하여 소송 진행 중

○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 등 징수

-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특별회원으로 하고 노조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동의 여부 확인 필요

※ 수협중앙회 산하 외국인 선원은 조합 특별회원 가입 동의서 제출 없이 조합비 납부('23. 4월 현지 선주,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의견)

※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선주가 외국인 노동자 서명 동의서를 받아서 노동조합에 제출

< 한국원양어선협회 단체협약 사례 >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

제1장 총칙

한국원양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한국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원양국적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어선원에 대한 노동법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권자로 상호 인정하며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상호성실의 원칙아래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회사"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를 말한다.
2.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외국인 선원을 말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협약은 회사와 회사에 고용된 선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여 이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4조 (협약갱신)

협회와 조합 중 어느 일방에서 이 협약의 갱신을 요청 할 때에는 이 협약의 기간 만료 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협의 결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조합비)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조합원으로서 조합가입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선원의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 조합원 가입 동의서 양식 >

조합원 (특별) 가입 동의서

MEMBERSHIP AGREEMENT TO JOINING THE K.O.I.U

선박명 Name of vessel		입/출항 안함 Date of Arrival/Departure		선적국적 Nationality of vessel		대리인명 Agent name	
		OO-OO-OO		KOREA			
NO	성명 Name	직책 Rank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대금번호 Passport	서명 Signature	
1							
2							
3							
4							
5							
6							
7							
8							
9							
10							

참고: 선박에 승무하는 본인들중 한국원양산업노동조합연합회 가입 노조원
한국원양산업노동조합의 (특별) 조합원으로 가입함을 동의합니다.
(This is to agree that persons serving on the above named vessel are members
Korea Ocean Industry Union affiliated with federation of seafarer's union)

1 페이지

※ 해운조합은 선주가 단체협약 내용을 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내용을 선내에 게시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여 외국인 선원들이 특별회원 가입, 조합비 납부 등을 인지 가능(단체협약서 제26조)

- 법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시에 따라 국내 선원 노조인 선원노련이 당사자가 되어 단체협약 체결



※ **명확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내국인 선원 취업 규칙 등 관련 법령 준용**

※ (참고)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① ~ ② (생략)

③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제120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 (참고) 「선원법」 제120조(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①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원의 과반수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선원에 대해 선원노련에 가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 (생략)

(이하 생략)

※ 반면, 관련부처(전 국토해양수산부)는 과거 외국인 선원 조합비 납부 문의에 대해 국내선원 보호 등을 위해 노사 간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 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관련부처 답변) 조합비 납부는 노사합의 사항(’08. 7월, 선원노동청과) 】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외국인 선원 고용시 선박소유자와 선원노동조합간의 합의’는 국내선원 보호 및 선박의 특수한 근로환경을 감안한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선원법」 제110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의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외국인선원 고용시 선원 1인당 일정액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권유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의 존속이나 폐지 여부는 당연히 해당 노사간 협의할 사항임

- 최근 민주노총 측에서도 노조(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를 설립하고 협상 대상으로 인정 요구

【 민주노총 선원노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위반 규탄(’22. 11월, 언론보도) 】

-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산하에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을 설립하고, 이를 해수부에 알려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 협의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 수협중앙회와 해수부,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노총 산하 연합을 제외하고 한노총 선원노련과 노사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해수부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자를 고발

○ 복지기금, 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개 미흡으로 불신 초래

- 외국인 선원 대상 노조회비 집행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복지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선원과 선주 대상 공개 필요

※ 복지기금의 경우 당초 외국인 선원이 아닌 **국내 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및 선원 처우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기로 **단체협약 체결**

※ 해운조합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지기금 집행내역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장학금 등 **국내 선원을 위한 용도로 집행**

< (참고) 해운조합 관련 선원노련 2021년도 복지기금 집행내역 >

(단위 : 원)

내용	집행액	내용	집행액
방역용 마스크 제작·구입	220,957,500	부산해사고 장학금 발전기금	20,000,000
바다의 날 기념 타올 제작·배포	168,245,000	선원(비조합원) 자녀 장학금	100,000,000
선원용 다국어 회화 책자 제작비	9,000,000	장학기금(한국해양장학재단)	100,000,000
선원(조합원) 자녀 장학금	300,000,000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지원(4개 학교)	44,606,112
한국해양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50,000,000	수산계고교 승선실습생 장학금	1,800,000
목포해양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110,000,000	6급 해기사 양성 교육비 지원	16,820,700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이메일 뉴스 서비스(선원/선박)	25,100,000
충남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수산 후계인력 육성방안 연구지원비	30,000,000
포항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LNG 운반선 선원일자리 연구용역	9,000,000
경남해양과학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선원 위령탑 관리비	95,212,610
인천해사고 장학금 및 발전기금	20,000,000	총액	1,400,741,922

- 국내선원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 복지기금 등을 노조운영 경비로 사용할 경우 사측의 노조 운영비 부당 원조행위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생략)

【 선원노련 회비, 복지비 등을 노조사업비 등으로 사용(’18. 5월, 언론보도) 】

- ‘16~’18년 선원노련 특별회비 수입은 39억~42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선원 관련 국내 선주들로부터 받는 수입은 약 23억원에 달함. 그 외 별도항목으로 책정된 복지기금은 18~19억원 수준으로 이를 합하면 40억원이 넘어 총예산 74~88억원의 절반 수준임
- ‘17년 선원복지 지출예산은 총 18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특별조합원 관리비 예산은 4억 5천만원이며, 나머지는 국내선원 장학사업비(5억원), 선원인력 양성기관 지원(5억원), 연구용역 등이나, 실제 집행금액은 6억 8,860만원으로 절반도 안됨
- 선원노련 관계자와 가맹노조 대표들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이 ‘17년 2억 7,924만원, ‘18년 2억 5,332만원이고, 대부분 목적외 사용이 많아 민주노총 측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선주 관련단체도 관리비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외국인 선원을 위해 집행했는지 여부 파악 곤란

※ 수협중앙회 등은 결산 검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나, 관리비 수입과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 구분해서 정리하지 않아 외국인 선원 관리 집행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3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지속 발생

-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률은 타업종 보다 낮으나 무단이탈은 지속적으로 발생

※ '21년 기준 등록외국인 1,093,891명 중 불법체류자 수는 125,022명으로 전체의 11.4%

<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록외국인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불법체류자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불법체류율	7.1%	7.2%	7.5%	9.5%	11.4%

※ 다른 업종으로 불법취업 등으로 인한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수는 '21년 기준 6,985명(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125,022명 중 5.6% 수준)

<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유학(D-2)	1,054	1,357	2,712	4,540	6,774
일반연수(D-4)	6,373	11,675	18,249	22,756	24,780
비전문취업(E-9)	45,387	46,142	44,832	45,757	49,439
선원취업(E-10)	5,421	5,689	5,808	6,062	6,985
방문동거(F-1)	2,724	3,072	2,956	3,657	4,111
거주(F-2)	3,063	2,631	2,276	2,133	1,950
방문취업(H-2)	2,282	2,177	1,943	2,703	2,867
기타	16,533	17,324	17,039	21,057	28,116

※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률은 '22년 기준 15.4% 수준(수협중앙회 통계)

- 무단이탈은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기피, 낮은 보수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건강상 이유로 선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례 ①(’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연근해 어선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두세 달 일하다가 임금이 높은 다른 어선으로 옮기고, 일부는 건강상 이유로 육상 숙소에서 장기간 휴식을 취한 후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은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기도 함

【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례 ②(’17. 12월, 언론보도) 】

- 수협중앙회와 선원 근로감독관에 등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 7월까지 수협을 통해 연근해어선에 취업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1만 3,278명 중 1,620명 (12.2%)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E10비자(선원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1만 5,348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약 34%에 이르고 있음

-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침에 따라 무단이탈 발생 시 선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현장 불만 발생
- ※ 선박소유자가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할 경우 시정지시, 주의, 또는 2년간 외국인 선원 고용 금지 조치(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 제13조)

○ 외국인 선원 보수 책정 등 근거 미흡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수부 고시)’ 특례에 따라 선원단체와 선박소유자 단체가 정하도록 재위임

※ (참고)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수부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487,640원

나. 적용의 특례 --- (생략)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 「선원법」 제59조 위임에 따라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제정되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외국인 선원 항목만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참고)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참고) '22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26년까지 국적 선원과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정

< (참고) 연도별 연근해어선 선원 최저임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내국인선원	1,238	1,319	1,415	1,518	1,641	1,760	1,982	2,153	2,216	2,250
외국인선원	1,040	1,100	1,180	1,180	1,265	1,265	1,400	1,632	1,723	1,822
육상노동자*	957	1,016	1,089	1,166	1,260	1,352	1,574	1,745	1,795	1,822

* 국내 육상노동자 최저임금(고용부 고시)

○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외국인 선원 관리와 계약 등을 통한 송출업체 통제 등을 위해서는 송입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2. 10월 기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록 선박관리업체는 157개이며, 이중 선주단체가 계약한 송입업체는 '수협중앙회' 20개소, '해운조합' 8개소임

【 송출·입 회사 관리 필요 의견(23. 4월, 현장 간담회 시 외국인 선원 관리회사 의견) 】

- 일부 현지 송출회사는 외국인 선원 지방자에게 약 2,500만원 요구, 외국인 선원 중에는 송출비용 충당을 위해 국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무단이탈하는 사례 발생
- 수협중앙회 등 일부 단체는 별도 관리회사를 설립, 500만원 이하로 통제를 시도 중이나, 이를 준수하는 곳은 5개 회사 정도이며, 송출·입회사 전반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임

-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 내규를 통해 송출비, 교육비, 사후관리비를 정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위임·위탁 근거가 없는 상태

< (참고)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1인당 송·출입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귀속대상 >

부담주체	항목	금액	귀속대상
외국인 선원	송출비용	5,500\$ 한도	송출회사
고용주(선주)	선원관리비	월 30,000원	수협중앙회
	관리수수료	월 10,000원	송입업체
송출회사	사후관리비	월 45,000원 한도	송입업체
	입국 후 교육비	210,000원	수협중앙회

※ (참고) 수협중앙회 '어선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제14조(관리업체 선정) ①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외국인선원 관리기본계약(중앙회 표준계약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업체 평가 및 쿼터배정) ①중앙회는 --- 관리업체의 운영적정성 확인 및 관리업체별 외국인선원 송입쿼터를 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업체 및 송출회사 점검) ①중앙회는 제24조의 관리업체 평가 등을 위하여 관리업체와 송출회사에 대해 서류 및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수협중앙회 송입업체 지도·점검결과 보고 사례 >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점검 결과보고

1. 목 적

- 외국인선원 사후관리 업무 이행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등 세제와 요건 확인 및 일제 운영실태 점검

2. 근 거 : 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제25조

3. 대 요

□ 방문일정 : 2023. 2. 14(수) ~ 2. 24(수)

□ 점검자 : 2팀 박성원, 정호희, 이세일, 서영문, 3팀 김재범, 김민복, 4팀 이이현, 정호재 문보리

구 분	점검 항목	소 개 자	점검자
1/14(수)	사후관리업 등록여부 CC-제인상	서영문	2팀 이이현 4팀 정호재
2/14(수)~17(목)	세제 관공여부 이전신고여부	문보리	2팀 이이현 4팀 정호재
3/17(목)	영문고지 영문고지-제인상	정호희	2팀 이이현 4팀 정호재
2/20(수)~21(목)	세정관리 세정관리	정호희	2팀 정호희 4팀 정호재
2/21(목)~22(금)	단순고지 단순고지 단순고지	문보리	2팀 이이현 4팀 정호재
2/22(금)~24(토)	영문고지 영문고지	정호희	3팀 김재범

□ 광복 원정작업

- 외국인선원 원정작업에 대해 자가격리 중추 업무 점검

□ 선박관리 업체조사

1. 선박관리업 등록
2. 외국인선원 보위금 납부(23년 1월 10일 기준)
3. 외국인선원 2023년 1월 10일 배정 쿼터(1월 10일 기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외국인선원	1	1	1	1	1	1	1	1	1	1	1	1

4. 외국인선원 관리

5. 외국인선원 관리요건 충족여부 점검(수입인사, 배정인사, 배정인사, 배정인사)

- 외국인선원 고용상태 현황 점검
- 외국인선원 고용 상태(단기, 해선, 이관, 휴직 등)에 대한 점검
- 외국인선원 사후관리 실적 점검
- 점검결과, 구사 등 고용상태점검 및 고용입력 실적 현황

3. 점검결과

□ 방문일정 : 2023. 2. 14(수) ~ 2. 24(수)

- 선박관리업 등록 여부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항목	비고	비고
선박관리업 등록	비고	비고
선박관리업 등록	비고	비고
선박관리업 등록	비고	비고

4. 점검결과

- 방문일정 : 2023. 2. 14(수) ~ 2. 24(수)
- 선박관리업 등록 여부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 방문일정 : 2023. 2. 14(수) ~ 2. 24(수)

- 선박관리업 등록 여부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 선박관리업 등록 실적 점검

- 참고로 관계부처(해수부)는 수협중앙회 감사 시 송출비용 관련 과도한 부담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

【 (참고) 해수부 수협중앙회 감사사례(20. 12월, 처분내용) 】

- 과도한 송출비용은 외국인선원 부담가중 및 급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비용, 교육비용 등을 고용주나 수협중앙회가 부담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IV. 개선방안

1 외국인 선원 제도 근거 정비

○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

- (1안) 「(가칭)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외국인 선원 관리 근거, 방법, 절차 등 마련

※ 주요내용 예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참고)

- 외국인선원고용정책위원회 및 실무회의 운영(고용규모 등 주요정책 심의)
- 외국인선원 도입계획 공표,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선원 구직자 명부 작성, 외국인선원고용허가, 근로계약, 사증발급 관련 규정
- 외국인 취업교육, 사용자교육, 교육기관 지정·관리
- 건강보험, 보종보험, 출국보험, 차별금지, 기숙사 제공, 사업장 변경 등 선원 보호규정
- 대행기관 지정, 관리,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등

- (2안) 「선원법」을 개정,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를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14년, ‘17년 정부 「선원법」 개정안 참고, 도입규모, 고용신고 절차, 교육·관리 등 위임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17년 정부 입법안 참고))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조(외국인 선원의 고용) 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u>외국인 선원의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u>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선(안)
(신설)	다만,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에서 입어국의 입어허가 조건에 따라 입어국 국적의 선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하려는 외국인 선원의 인원과 입어허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선박소유자가 <u>외국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u>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u>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사유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u>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경우 <u>이 법과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u>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선원인력 수급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할 수 있다.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결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와 유사하게 총리실, 해수부,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칭)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근거 마련

※ 실무위원회에 선주관련단체, 국내 선원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〇〇조(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선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1. 외국인선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2. 외국인선원 업종별 도입규모 등에 관한 사항</u> <u>3. 외국인선원을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선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u>외국인선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④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 선원 수요, 공급, 운영·관리 관련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결정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활용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〇〇조(외국인선원 실태조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u>외국인 선원 수요, 공급, 운영·관리 관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u> 하고 그 결과를 '외국인선원 정책 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적선원 우선 고용 근거 마련

- 국적선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선원 고용 전 국적선원 고용 노력을 증빙하도록 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〇〇조(외국인선원 고용원칙)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u>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u> 또는 같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u>선원 구직·구인등록기관, 선원 관련단체 등에 우선 내국인 선원 고용을 신청</u>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신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u>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u> 하여야 한다.

○ 외국인 선원 고용·교육·관리 업무 위탁근거 마련

- 관련 단체에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수부 등 지도·감독 근거 마련

※ (1안) 현행과 같이 업종별 선주 관련단체에 위탁(업무실적 평가, 지도·감독 근거 보완)

※ (2안) 외국인 선원 관리 전담 공공기관 설립 또는 지정·운영

※ (3안) 다른 업종 노동자 사례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52조 개정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시행령 개정) >

현 행	개 선(안)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u>법 제○○조제○항 내지 제○항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등 관련업무를 ○○ 등 관계기관에 위탁한다.</u>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u>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외국인 선원의 고용 관련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u>할 수 있다.

○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확인 절차 개선

- 고용신고 또는 고용추천 시 노조의견서 제출 절차를 삭제하거나 필요 시 선사 등에 구성된 국내 단위 노동조합 의견 또는 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 내 국내선원 과반수 의견을 듣도록 개선

※ 임금체불, 선원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별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해양청에서 확인·제재 추진

⇒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제5조(고용신고)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생략)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 (생략) 1. ~ 2. (생략) 3. <u>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4. ~ 5. (생략)	제5조(고용신고)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생략)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 (생략) 1. ~ 2. (생략) 3. (삭제) 4. ~ 5. (생략)
제5조의2(고용추천) ①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신청서(---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1. <u>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 1부</u> 2. ~ 9. (생략)	제5조의2(고용추천) ①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신청서(---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1. (삭제) 2. ~ 9. (생략)

2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및 집행내역 공개

○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관리비 등 징수 근거를 마련하되, 징수 금액, 납부대상 결정·변경 시 사전에 노사정 실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00조(관리비 등) ① 법 제○조 제○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 근로계약을 대행하는 기관은 <u>필요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외국인 선원 교육·복리후생을 위한 관리비용 등을 징수</u>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 <u>납부 대상, 규모 등을 결정·변경하기에 전에 법 제○조에 따른 ‘외국인선원정책실무위원회’에 보고</u>하여야 한다.

- 국내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복지 전담 기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관리 추진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00조(관리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 고용센터는 필요할 경우 선주 등 사용자로부터 <u>국내 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비용을 징수</u> 할 수 있다.

○ 관리비, 복지기금 등 집행내역 공개

- 외국인 선원 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비용의 집행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내역 등을 선주, 외국인 선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

* (집행용도 예시) 외국인 선원 통역 등 근무 지원, 교육, 숙소·휴식공간 지원 등 외국 인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 에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00조(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개) ① 제○조 제○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등은 외국인 선원 <u>통역 등 근무 지원, 교육, 숙소·휴식공간 지원, 기타 외국인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u> 하여야 한다. ② 제○제○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징수한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u>전년도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사용자 등에게 공시하고, 외부에 공개</u>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부 용도와 집행결과 공개 방법·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외국인 선원 교육·복지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근거 명확화

-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유사하게 해수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관련 절차 정비

⇒ 「선원법」 제59조 및 해양수산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선원(외국인선원을 포함한다)</u> 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예시('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 >

현 행	개 선(안)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〇,〇〇〇,〇〇〇원 2) (생략) 나. 적용의 특례 1) ~ 2) (생략)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〇,〇〇〇,〇〇〇원 <u>(외국인선원 월 〇,〇〇〇,〇〇〇원)</u> ※ <u>외국인선원 중 외항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2) (생략) 나. 적용의 특례 1) ~ 2) (생략) 3) <u>(삭제)</u>

○ 외국인 선원 교육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선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 등 관련 경력자를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 관련단체에 대한 정기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근거 마련
- 외국인 선원 전담 상담·교육 및 복지증진 지원기관 지정·운영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〇〇조(외국인 선원 고용원칙) ①~②(생략) ③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u>모집과정에서 어업 등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고려</u>하여야 한다. 제〇〇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사용자나 외국인선원, 관련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u>을 할 수 있으며,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u>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선원, 관련단체에 대해 <u>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점검</u>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〇〇조(외국인 선원 지원기관 설치·운영) ① 국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u>상담과 교육, 건강·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u>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외국인 선원 고용 우수 선주 등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해양수산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

< 개선방안 예시(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조(우수 사용자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 <u>고용이나 상담·교육·복지 등 관리 전반에서 모범사례나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포상</u> 할 수 있다.

- 법무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 정기·수시 실태조사 및 단속 실시 후 엄정한 법 집행 추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95조(벌칙)에 따라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한 사람, 고용주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임

○ 외국인 선원 관리 공공성 강화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등에 따른 선주 책임 부여 관련 법적 근거 보완
- 송입·송출업체가 외국인 선원에게 송출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거나 외국인선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근거 마련
 - * 송입업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하위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배정 규모 삭감 등
-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이 해양수산부장관 위탁을 받아 송입업체에 대한 정기점검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선원법 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조(외국인 선원 관리 등) ①~③(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u>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u>할 수 있다. 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경우 2.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한 경우 3. 외국인선원에 대한 선상폭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용계약 기간종료, 해지 또는 파기된 선원을 즉시 귀국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고충상담 방해, 그 밖에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현 행	개 선(안)
(신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u>송입업체에서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등의 조치</u>를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 등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u>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송입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선원과 관련한 「해운법」 및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u>한 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 조치내용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1. 외국인 선원 제도 근거 정비	○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고용기준 등 결정(정기 실태조사 포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국적선원 우선 고용 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외국인 선원 고용·교육·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 ○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확인 절차 개선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
2.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및 집행내역 공개	○ 관리비 등 징수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관리비, 복지기금 등 집행내역 공개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3. 외국인 선원 제도 근거 정비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근거 명확화 ⇒ 「선원법」 제59조 및 해양수산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 개정 ○ 외국인 선원 모집대상, 교육, 관리, 점검 등 근거 마련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에 관련 규정 신설,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 외국인 선원 관리 공공성 강화 ⇒ 「(가칭)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

☐ 조치기한 : 2025. 12월

정 본 입 니 다 .

2023. 9. 6.

국 민 권 의 위 원

